## 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1후10855 등록무효(특)

원고,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(조직변경 전 상호: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)

소송대리인 특허법인(유한) 다래

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

피고, 피상고인 피고

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

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

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허1854 판결

판 결 선 고 2021. 12. 10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## 1. 상고이유에 관하여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,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,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, 이유모순,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.

## 2.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

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(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),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,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.

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(다만,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).

## 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.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

대법관 조재연

주 심 대법관 민유숙

대법관 이동원